

한동대학교 학생 생활관
자치회 집행부
회칙 제정안 (15.08.29)

자치회 집행부 회칙 제정 Task-Force Team

08 학번 정범진(기계제어공학부)

11 학번 이유준(전산전자공학부)

자치회 집행부 회칙 제정 자문위원

09 학번 권여향 (국제어문학부)

12 학번 최경준 (법학부)

<목차>

**I.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자치회 집행부 회칙
제정사유 및 내용**

**II.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자치회 집행부 회칙
(제정안)**

I.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자치회 집행부 회칙 제정사유 및 내용

1 장 총칙

1. 제정사유

“자치회 집행부 회칙”이 “자치회 회칙”에서 분리됨에 따라 기존 “자치회 회칙” 1 장 ‘총칙’을 집행부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구성관련 부분은 RC 정관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자치회 회칙”에는 없었지만 특별위원회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무 지원에 관한 방법을 명시하고자 한다.

2. 제정내용

1 장의 명칭을 ‘총칙’으로 정한다. 세부조항에 자치회 집행기구로서 명칭, 목적, 설치, 구성에 대한 명시를 필요로 한다. 제 6 조(특별위원회) 조항을 제정하였고, 제 7 조(규정)을 통하여 회칙 외의 상황에 대한 조항을 만들었다.

3. 제정안

제 1 조 (명칭)

본 공동체는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자치회 집행부(이하 “집행부”)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집행부는 한동대학교의 학생생활관이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자율과 책임에 의거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되는 인성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치회 회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제 3 조 (설치)

본 공동체는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내에 둔다.

제 4 조 (구성)

본 공동체는 임원단 회의, 자치회장단, 국장단, 국원 및 동장단을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 회의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집행부 각 국)

집행부 각 국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그 내용을 별지의 형태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조 (특별위원회)

- ① 자치회의 특별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으로 칭하며, 대우는 국장에 준한다.
- ③ 기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각 위원회 회칙에 따른다.

제 7 조(규정)

집행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자치회 회칙 및 본 회칙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단 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2 장 자치회장단

1. 제정사유

자치회장단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본 회칙의 상위 회칙인 "자치회 회칙"에는 실무 보다는 지위, 자격 및 임기에 관한 부분이 강조 되어있기에, 이번 제정하는 "집행부 회칙"에는 집행부 내에서의 권한을 위주로 제정하고자 한다.

2. 제정내용

2 장의 명칭을 '자치회장단'이라 정한다. 세부조항으로 업무감독권 및 구성원 해임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각 조를 신설한다.

3. 제정안

제 8 조 (자치회장단의 업무감독권)

- ① 자치회장은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회칙에 따라 국장단과 동장단을 지휘 및 감독한다.
- ② 부 자치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자치회장을 대리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과 함께 국장단 및 동장단을 지휘·감독한다
- ③ 자치회장단은 국장단과 동장단의 업무나 행정처분이 회칙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 9 조 (집행부 구성원의 해임에 대한 권한)

- ①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회장단은 집행부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권한의 오남용
 - 2. 직무해태

3. 본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
 4. 본 공동체의 운영에 중대한 사고
 5. 기타 집행부 구성원의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집행부 구성원의 해임이 있을 경우, 회장단은 해임대상자와 해임 사유를 임원단 회의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장 동장단

1. 제정사유

장차 RC 제도가 한동대학교 학생자치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권한을 가진 자들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의 구비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자치회장단이 임명하는 동장 이하 RA 들과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RC 대표 이하 임명직을 제도적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자 한다. 과거 점호를 비롯한 생활관 수칙에 관한 권한을 비롯하여 그 권한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자치회 회칙"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RC 정관과 상충 되지 않고 장차 RC 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본 장을 제정하고자 한다.

2. 제정내용

4 장의 명칭을 '동장단'으로 한다. 이하 세부조항들을 동장단의 구성, 임기, 업무 및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각 조를 제정한다.

3. 제정안

제 10 조 (동장단의 구성)

동장단은 동장 및 RA 로 구성된다.

제 11 조 (동장의 지위 및 임기)

- ① 동장의 지위는 집행부 국장에 준한다.
- ② 동장의 임기는 한 학기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동장의 자격 및 임면)

- ① 동장의 임면은 자치회장이 한다.
- ② 동장은 자치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③ 동장은 타 선출직 및 임명직과 겸임할 수 없다.
- ④ 동장은 생활관 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생활관에 4 학기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⑤ 동장은 직전 학기 별점 6 점 이하여야 한다.

제 13 조 (동장의 업무 및 권한)

- ① 동장은 각 RC 팀장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
- ② 동장은 별점부과 및 소급권한을 가진다.
- ③ 점호시간에 점호방송 및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제 14 조 (RA 의 지위 및 임기)

- ① RA 는 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 ② RA 는 중임할 수 있다.

제 15 조 (RA 의 업무 및 권한)

- ① RA 는 점호시간을 준수하며 각 층 별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 ② RA 는 수칙집행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을 돕는다.
- ③ 기타 RA 의 업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은 자치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장 집행부 회칙 개정

1. 제정사유

“집행부 회칙”은 상위 회칙인 “자치회 회칙”과는 다르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

2. 제정내용

5 장의 명칭은 ‘집행부 회칙 개정’으로 한다. 세부조항은 원활한 회칙 개정을 돕도록 발의, 절차 및 의결을 각 조로 제정한다.

3. 제정안

제 16 조 (발의)

집행부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발의할 수 있다.

- 1. 집행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2. 자치회장단의 발의

제 17 조 (절차 및 의결)

- ① 발의된 집행부 회칙 개정안은 7 일 이내에 임원단 회의를 통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 ② 전항의 의결은 임원단 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상정된 집행부 회칙 개정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승인에 의해 의결된다.
- ④ 자치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3 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된 회칙은 즉시효력이 발생한다.

Ⅱ.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자치회 집행부 회칙 (제정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공동체는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자치회 집행부(이하 "집행부")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집행부는 한동대학교의 학생생활관이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자율과 책임에 의거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되는 인성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치회 회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제 3 조 (설치)

본 공동체는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내에 둔다.

제 4 조 (구성)

본 공동체는 임원단 회의, 자치회장단, 국장단, 국원 및 동장단을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 회의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집행부 각 국)

집행부 각 국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그 내용을 별지의 형태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조 (특별위원회)

- ① 자치회의 특별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으로 칭하며, 대우는 국장에 준한다.

제 7 조(규정)

집행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한동대학교 학생생활관 자치회 회칙 및 본 회칙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단 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 2 장 자치회장단

제 8 조 (자치회장단의 업무감독권)

- ① 자치회장은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회칙에 따라 국장단과 동장단을 지휘 및 감독한다.
- ② 부 자치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자치회장을 대리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과 함께 국장단 및 동장단을 지휘·감독한다.
- ③ 자치회장단은 국장단과 동장단의 업무나 행정처분이 회칙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 9 조 (집행부 구성원의 해임에 대한 권한)

- ①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회장단은 집행부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권한의 오남용
 2. 직무해태
 3. 본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
 4. 본 공동체의 운영에 중대한 사고
 5. 기타 집행부 구성원의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집행부 구성원의 해임이 있을 경우, 회장단은 해임대상자와 해임 사유를 임원단회의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동장단

제 10 조 (동장단의 구성)

동장단은 동장 및 RA 로 구성된다.

제 11 조 (동장의 지위 및 임기)

- ① 동장의 지위는 집행부 국장에 준한다.
- ② 동장의 임기는 한 학기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동장의 자격 및 임면)

- ① 동장의 임면은 자치회장이 한다.
- ② 동장은 자치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③ 동장은 타 선출직 및 임명직과 겸임할 수 없다.
- ④ 동장은 생활관 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생활관에 4 학기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⑤ 동장은 직전 학기 별점 6 점 이하여야 한다.

제 13 조 (동장의 업무 및 권한)

- ① 동장은 각 RC 팀장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
- ② 동장은 별점부과 및 소급권한을 가진다.
- ③ 점호시간에 점호방송 및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제 14 조 (RA 의 지위 및 임기)

- ① RA 는 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 ② RA 는 중임할 수 있다.

제 15 조 (RA 의 업무 및 권한)

- ① RA 는 점호시간을 준수하며 각 층 별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 ② RA 는 수칙집행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을 돕는다.
- ③ 기타 RA 의 업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은 자치회 회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 4 장 집행부 회칙 개정

제 16 조 (발의)

집행부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발의할 수 있다.

1. 집행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자치회장단의 발의

제 17 조 (절차 및 의결)

- ① 발의된 집행부 회칙 개정안은 7 일 이내에 임원단 회의를 통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 ② 전항의 의결은 임원단 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상정된 집행부 회칙 개정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승인에 의해 의결된다.
- ④ 자치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3 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된 회칙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정규학기 개강시점부터 적용된다.

부칙

본 자치회 회칙은 자치회회칙개정 TFT 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2016 년 3 월 1 일 부로 효력을 갖는다.

[자치회 회칙개정 TFT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08 학번 정범진(기계제어공학부)
- ◆ 11 학번 이유준(전산전자공학부)

18대 학생생활관 자치회 '정식' 집행부 각 국 규칙

제 1 조 (집행부 각 국)

집행부는 자치회장단의 통할하의 다음과 같은 국으로 구성된다.

- ① 총무국
- ② 복지국
- ③ 문화국

제 2 조 (국장의 자격 및 임면)

- ① 국장단의 임면은 자치회장단이 한다.
- ② 국장단은 자치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 ③ 국장단은 타 선출직 및 임명직과 겸임할 수 없다.

제 3 조 (국장의 임기)

집행부 국장의 임기는 자치회칙이 정하는 자치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총무국장의 업무)

- ① 총무국장은 본 공동체의 재정과 회계를 담당한다.
- ② 총무국장은 재정을 재원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③ 총무국장은 자치회장단을 도와 기타 본 공동체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조 (복지국장의 업무)

복지국장은 생활관 내 복지사업을 담당하며, 자치회 회원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 6 조 (문화국장의 업무)

문화국장은 생활관 내 문화사업을 담당하며, 자치회 회원의 문화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9대 학생생활관 자치회 '어울림' 집행부 각 국 규칙

제 1 조 (집행부 각 국)

집행부는 자치회장단의 통할하의 다음과 같은 국 및 직책으로 구성된다.

- ① 복지국
- ② 문화국
- ③ 총무
- ④ 회계
- ⑤ 서기

제 2 조 (직책별 자격 및 임면)

- ① 국장단의 임면은 자치회장단이 한다.
- ② 국장단은 자치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 ③ 국장단은 타 선출직 및 임명직과 겸임할 수 없다.
- ④ 총무, 회계, 서기는 각 국장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 3 조 (국장의 임기)

집행부 국장의 임기는 자치회칙이 정하는 자치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총무의 업무)

- ① 총무국장은 본 공동체의 예산과 결산을 담당한다.
- ② 총무국장은 재정을 재원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③ 총무국장은 자치회장단을 도와 기타 본 공동체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조 (회계의 업무)

회계는 자치회 내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각 RC의 회계들도 총괄 관리한다.

제 6 조 (서기의 업무)

서기는 생활관 내 게시판 및 화장실 소식지를 관리하며, 자치회내 문서를 총괄 관리한다.

제 7 조 (복지국장의 업무)

복지국장은 생활관 내 복지사업을 담당하며, 자치회 회원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 8 조 (문화국장의 업무)

문화국장은 생활관 내 문화사업을 담당하며, 자치회 회원의 문화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